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227호(2014-06) 발행일 : 2014. 02. 14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식품규제 정책 변화 추이와 규제합리화 방향

*사회규제인 식품규제 정책은 1962년 제정된 식품위생법에 기초를 두고 시작되었으며,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0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008), 식품안전기본법(2008) 등이 추가 제정되면서 주된 법적 근간이 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정후 식품규제정책은 식품안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로 규제 신설, 강화가 주된 방향이었고, 특히 김대중 정부의 규제 총량제로 기존규제의 50%를 폐지 한 후 약화된 식품안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규제 신설, 강화의 방향성을 보여왔음*

*하지만 OECD의 권고처럼 식품규제는 사회규제로서 경제규제와는 달리 품질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특히 식품안전관리 강화,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식품규제 개선이 필요함*

정기혜
식품정책연구센터장

## 1. 우리나라 규제정책 현황

■ 규제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의미하는 협의의 규제와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활동 전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규제로 정의되고 있음

○ 규제는 예산, 행정조직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감추어진 조세(hidden tax)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정부의 규제개선은 신설된 규제의 엄격한 관리와 기존규제의 지속적 정비라 할 수 있음

■ 규제는 성격상 경제규제, 사회규제, 행정규제로 분류되며 201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경제규제 2,695건, 사회규제 2,302건, 그리고 1,955건의 행정규제로 구성되어있으며, 식품규제는 환경, 산업안전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규제로 분류되고 있음

〈표 1〉 우리나라의 규제성격별 규제현황

| 구분 | 총건수 | 세부내용 | 비고 |
|---|---|---|---|
| 경제규제 | 4,778 | 진입 1,062, 가격 125, 거래 951, 품질 557 등 | |
| 사회규제 | 4,432 | 환경 596, 산업재해 206, 소비자안전 1,085, 사회적 차별 415 등 | |
| 행정규제 | 4,965 | 각 행정기관 보고 의무 | |

자료: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rrc.go.kr, 2013.

■ 규제개선은 규제 신설[1], 폐지, 강화, 완화, 타법이관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규제 적용방식은 최근 사전 명령적 규제추진에서 사후시장유인적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 우리나라 규제등록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09년 급증하였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 등록기준 변경과 미등록 규제 발굴 및 등록에 의거한다고 볼 수 있음

○규제사무 등록기준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사무는 등록하고 있으며, 규제 등록건수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규제등록 첫 해인 1998년 8월 총 10,717건으로 시작하였음

– 이후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따른 성과로 2008년 말에는 총 5,186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9년 규제등록 기준의 변화로 등록건수가 증가하여 2013년 현재 총 14,177건(주규제 7,182건 + 부수규제)이 등록되어 있음

〈표 2〉 등록규제 현황

| 연도 | '98 | '99 | '02 | '04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
| 총계 | 10,185 | 7,128 | 7,724 | 7,846 | 8,084 | 5,114[1] | 5,186 | 6,740[2] | 7,055[2] | 6,952 | 13,914 | 14,177 |

주: 1) '07.2월 규제등록방식 변경(개별행위단위 등록 → 사업단위 등록)으로 등록규제 수 급감
2) '09~'10년 법령상 미등록규제 발굴 · 등록(2,276개)으로 등록규제 수 증가
자료: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rrc.go.kr

## 2.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동향

■ 우리나라 규제개혁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선진화 전략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특징임. 초창기에는 국가주도 경제를 민간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일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끌어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1960~70년대) 경제개발시대로 산업을 보호하고 각종 자원배분에 국가가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등 규제가 일반화된 시기였고, 규제방식도 명시적 법령 뿐 아니라 행정지도, 내부지침, 관행 등 법적 근거 없이도 행해졌음

1)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정책내용을 법규에 구체화하는 사후적 조치이면서도, 별도의 중요한 정책검토 과정으로 여타 법규과의 충돌여부, 형평성 문제, 중복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하위규정이 상위규정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점검하는 과정임.

■ (1980년대) 이때는 정부주도 경제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축소하고 공기업 민영화 등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또한 우리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시장개방 및 제도 투명화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음

○ 김영삼 정부는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부패방지, 행정내부 개혁을 포함한 규제개혁 노력을 하였고, OECD 가입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체 제도에 대하여 점검을 받고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시기였음

■ (1990~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획기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었음. 즉, 1997년 IMF 금융위기를 맞아 우리경제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규제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음. 특히, 김영삼 정부 말기에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과 이에 근거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 강력한 규제감축 분위기 속에서 전체 규제수가 1/2로 줄어들었고, 새로 증가하는 규제수는 미미하였음

■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는 덩어리 규제개혁을 통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민간기업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여러 부처에 관련된 복합규제나 앞뒤 단계에 존재하는 규제를 포함한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음

■ (2000년대 중후반)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에 맡기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경향이 있었음

■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앞서 서술한 과거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우선 규제개혁과 국정과제 이행을 연계한 것이고, 규제개혁의 방향을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Two-Track으로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임

○ 즉,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현장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이번 정부는 거창한 정책보다는 신발속 돌멩이, 손톱밑 가시와 같이 작지만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3. 외국의 규제정책 현황

■ 외국에서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특히 영국, 미국, 호주는 범정부적 규제관리체계와 법제를 갖추고 있는 반면 독일은 주로 행정입법 절차를 개선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음

○ 규제개혁에 대한 국제간 협력은 OECD 경쟁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제도 개발, 국가간 규제개혁 성과 비교 등이 논의되고 있음

〈표 3〉 한국, 미국, 영국의 규제개혁 법제 비교

| 구분 | | 한국 | 미국 | 영국 |
|---|---|---|---|---|
| 법제도 | 근거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절차법<br>대통령명령12866<br>규제유연화법<br>문서업무감축법 | 입법 · 규제개혁법<br>(LRRA 2006)<br>법령문서법(SI Act 1946) |
| | 적용기관 | 모든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br>(감사원 제외) | 모든 연방행정기관<br>(워싱턴 DC, 국영기업 제외) | 모든 행정기관<br>지방정부 |
| | 적용범위 | 정부제출법안 행정입법 | 행정입법<br>(행정부 법안제출권 없음) | 기존법률, 행정입법<br>정부제출법안<br>행정입법안<br>의원입법안(권장) |
| | 적용제외 사무 | 안보, 형사, 행형, 조세<br>(세목, 세율, 부과징수) | 외교, 국방 | 예외없음<br>(단, 행정부는 조세 신설, 변경,<br>형사죄목 신설, 압수, 수색, 구금,<br>조사등 권한신설 불가) |
| 기구 | 정책기구 집행기관 | 규제개혁위원회<br>(대통령소속 민관합동기구, 총리실이 직무보좌) | 대통령규제정책자문그룹<br>(의장:부통령)<br>OMB/OIRA<br>(대통령소속 행정기관) | 규제정책위원회<br>위험 · 규제 자문위원회의<br>BRE(독립행정기관) |
| 의회통제 | 기관 | 각 상임위원회 | 양원 각 상임위원회<br>상원행정위원회<br>하원감독 · 정부개혁위원회<br>(규제소위)<br>연방감사원(GAO) | 양원 본회의<br>양원합동 행정입법위<br>하원행정입법위<br>하원 규제개혁위 |
| | 수단 | 사후제출 해명요구 | 사전협의 · 사후제출 · 효력유보<br>(30~60일)<br>무효화(양원합동결의) | 사전제출 – 승인권<br>사후제출 – 거부권(40일내) |

자료: 강은봉(2012).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4. 식품안전규제 현황 및 특성

### 가. 식품안전규제 특성

- 식품분야는 규제가 가장 강한 분야의 하나로 원료, 시설, 제조공정, 제품, 영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게다가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식품의 원재료와 가짓수가 무수히 많을 뿐 아니라, 개별 식품별로 원료 생산, 수입, 가공, 유통, 판매 등 각 단계마다 관리해야 할 위해요인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특히 수입 식품류의 양과 종류가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에서의 식품안전 사고가 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민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매우 높아졌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몰랐던 새로운 위험물질이 발견되고 사회 문제화 될 때마다 안전관리 규제가 대폭 도입되곤 하였고, 더불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정서적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오고 있음

## 나. 관련 법령 현황

■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에 6개 부처 소관 27개[2] 법률이 열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등록 규제 14,177건의 3.7%인 507개 이상의 규제가 포함되어, 운용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규제에 해당됨

〈표 4〉 법령별 식품안전 규제 현황(2013. 6월말 기준) (단위: 건)

| 법령 | 소관부처 | 등록규제수 |
|---|---|---|
| 계 | | 507 |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4 |
| 식품위생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114 |
| 건강기능식품관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33 |
| 어린이식생활관리특별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5 |
| 축산물위생관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49 |
|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복지부 | 2 |
| 약사법* | 보건복지부 | 18 |
| 식품산업진흥법 | 농림축산식품부 | 49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림축산식품부 | 18 |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 4 |
| 농약관리법 | 농림축산식품부 | 40 |
| 비료관리법 | 농림축산식품부 | 17 |
| 양곡관리법 | 농림축산식품부 | 7 |
| 인삼산업법 | 농림축산식품부 | 16 |
| 먹는물 관리법 | 환경부 | 35 |
| 수도법 | 환경부 | 31 |
| 주세법 | 국세청 | 16 |
| 염관리법 | 해양수산부 | 5 |
| 학교급식법 | 교육부 | 4 |
| 학교보건법 | 교육부 | 2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 10 |
| 소금산업진흥법 | 해양수산부 | 8 |

주: * 동물용 의약품 관련 규정에 한정

■ 주요한 규제분야는 영업 인허가에서 원료사용, 제조시설 및 전문인력 고용 등 제품 생산, 표시 · 광고 제한 및 유통기한, 유해제품 회수 · 폐기, 품질 및 안전성 검사 및 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특히 식품안전 규제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5개의 규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농축산식품부에서 186개 규제를 가지고 있음

■ 507개인 규제의 개수만으로는 식품안전 규제가 강하지 않다고 잘못 오인될 수 있으나 식품규제의 규제는 동일한 1개의 규제라고 하더라도 여타분야 규제와 비교해서 훨씬 상세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음

2)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소금산업 진흥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다. 부처별 식품규제 내용

■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규제의 세부내용은 품목별 고시의 형태로 식품공전 등에 정해져 있는데 시험방법, 성분 규격, 제품기준을 모두 포함한 전체 고시내용을 규제 1개로 등록하고 있음. 예컨대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식품의 규격고시'는 각기 규제 1개지만, 규제 부담수준은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높음

〈표 5〉 부처별 식품관련 세부 규제내용

| 소관 | 법령 | 진입/퇴출 규제 | 영업활동 규제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기본법 | – | 생산판매금지, 회수의무, 생산 · 판매기록보관, 검사명령 |
| | 식품위생법 | 영업등록 및 변경, 영업신고대상,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즉석 제조판매업 신고, 수입식품대행자 신고, 동업 자조합 설립허가, 영업허가 취소, 우수업소지정, HACCP업소지정 · 지정취소 기준, 폐업신고, 영업승계, 영업소 폐쇄 조치 | 식품 · 첨가물 · 기구 · 용기 · 포장 기준규격, 식품표시기준, 식품의 한시적 기준, 수입금지품목, 수입품 검사, 검사기관지정, 자가품질검사, 식품 · 영업소 안전성 평가, 위생점검기준, 영업자 · 제조 · 가공업자 준수사항, 표시광고심의, 업종별 시설기준, 교육명령, 교육기관 지정, 허가수수료, 유통기한설정, 보고의무 대상, 위해식품판매금지, 긴급회수, 폐기처분, 과태료 · 과징금 기준, 종업원 건강진단, 수입신고, 영양사 · 조리사의 자격 · 의무고용 · 면허취소, 청소년 주류제공금지, 시설개수명령, 기준규격 없는 물품 판매금지 등 |
| | 건강기능식품관리법 | 관련단체 설립인가, 제조업허가, 수입판매업 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 업종별 시설기준, 의약품제조시설 사용기준, 제조기준, 원료 및 제품 기준규격, 자가 품질검사의무, 수입신고검사, 기능성표시 광고심의, 품질관리인 고용, 유사표시금지, 영업장 검사, 기준규격위반식품 판매금지 |
|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 우수판매업소 지정, 고열량 · 저영양식품 지정고시,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표시, 광고제한, 건강친화기업 지정, 급식지원센터 정보제공의무, 품질인증 기준, 식생활 안전 · 영양 평가 |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 | – | 음주 경고 표시, 음주광고 제한 |
| | 약사법 | 동물약국 개설등록 신청, 동물약품 도매상 허가, 검정기관 지정 |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기준, 안전사용기준, 수입품목허가, 사료첨가물 제조 · 판매 제한, 동물용 의약품 표시의무 |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법 | 우수인증기관 지정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표시방법,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한, 정기심사, 부정행위 금지, 전통식품 표준규격, 공장심사, 품질인증기관 보고의무, 인증심사원 자격, 관련문서 비치 및 보고, 인증식품 우선구매, 식품명인 자격 |
| |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인증에 관한 법률 |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 부정행위 금지,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취소 |
| | 인삼산업법 | 인삼류 제조업 신고 | 시설기준, 자체검사업체 지정 및 취소, 인삼류 검사, 미검사품 거래제한, 품질인증기간 |
| | 농약관리법 | 제조 · 수입 · 판매업 · 원제업등록, 농약방제업 신고 | 원제 등록, 농약품목 등록, 농약 표시기준, 불량농약 폐기명령, 허위과대광고 규제, 판매관리인 교육, 구매자정보 기록, 유통중 농약검사, 수출입 승인, 수입신고, 유해농약 수입금지, 안전사용기준 |
| | 비료관리법 | 비료생산업 등록, 수입업 신고 |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기준, 비료품질검사,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조원료의 장부기재, 비료공정규격, 수입제한 |
| 해양수산부 | 소금산업진흥법 | 소금제조업 허가 | 염 제조시설 기준, 염 품질검사 및 수수료, 검사기록 보관, 천일염 인증기관 지정취소 |
| 교육부 | 학교급식법 | – | 급식시설 시설기준, 급식 위탁운영기준, 위생안전 관리, 급식 전담직원 배치 |
| | 학교보건법 | – | 교사내 식품위생기준, 학교환경 식품위생기준 |
| 환경부 | 수도법 | 일반수도사업 인가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안전기준 |

### 라. 제 · 개정 현황

■ 식품관련 여러 법중 근간이 되는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1962년 제정 이래 2012년까지 규제개선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제 ·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6회로 집계되었고, 식품위생법은 47회, 시행령이 72회, 시행규칙이 83회로 제 · 개정 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대별로는 2000년대 이후에 91회로 1960년대 21회, 70년대 26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200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6〉 연도별 제 · 개정 회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 계 | 1960년대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 |
|---|---|---|---|---|---|---|
| 합계 | 206 | 21 | 26 | 28 | 36 | 95 |
| 식품위생법 | 50 | 2 | 3 | 3 | 10 | 32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73 | 6 | 8 | 8 | 17 | 34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83 | 13 | 15 | 17 | 9 | 29 |

### 마. 규제방식 현황

■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규제를 규제방식으로 분류하여보면, 95건이 투입, 7건 성과, 시장유인이 6건이었음. 규제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108건이 소비자안전, 1건이 사회적 차별 규제로 분류되고 있음

〈표 7〉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규제 성격별 현황 (단위: 건)

| 연도 | 분야 | 합계 | 사회적 규제 | 규제방식 | | | 규제영역 | | | | 행정적 규제 |
|---|---|---|---|---|---|---|---|---|---|---|---|
| | | | | 투입 | 성과 | 시장 유인 | 환경 | 산업 재해 | 소비자 안전 | 사회적 차별 | |
| 2008 | 식품 | 86 | 86 | 86 | 0 | 0 | 0 | 0 | 85 | 1 | 0 |
| | 전체 | 5,186 | 1,877 | 1,725 | 62 | 90 | 456 | 186 | 910 | 325 | 1,001 |
| 2009 | 식품 | 99 | 99 | 97 | 1 | 1 | 0 | 0 | 98 | 1 | 0 |
| | 전체 | 11,050 | 3,476 | 3,127 | 183 | 166 | 854 | 464 | 1,556 | 602 | 3,775 |
| 2010 | 식품 | 110 | 110 | 107 | 1 | 2 | 0 | 0 | 109 | 1 | 0 |
| | 전체 | 12,120 | 3,696 | 3,274 | 205 | 216 | 878 | 490 | 1,684 | 643 | 4,199 |
| 2011 | 식품 | 111 | 107 | 97 | 4 | 6 | 0 | 0 | 106 | 1 | 4 |
| | 전체 | 13,147 | 4,134 | 3,535 | 246 | 353 | 968 | 497 | 1,993 | 676 | 4,530 |
| 2012 | 식품 | 114 | 108 | 95 | 7 | 6 | 0 | 0 | 107 | 1 | 6 |
| | 전체 | 13,914 | 4,387 | 3,675 | 303 | 409 | 1,074 | 494 | 2,096 | 723 | 4,853 |
| 2013 | 식품 | 114 | 108 | 95 | 7 | 6 | 0 | 0 | 107 | 1 | 6 |
| | 전체 | 14,175 | 4,432 | 3,688 | 314 | 430 | 1,075 | 495 | 2,131 | 731 | 4,965 |

자료: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rrc.go.kr

바. 정책제언

- 무역 자유화, 개방화로 식품안전을 지켜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안전규제의 합리화는 최후의 보루일 수 있음. 이런 국제적 현실속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규제강화를 채택하고 있고, OECD도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규제합리화를 권고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사회규제인 식품안전규제는 품질 개선을 위해 경제규제와는 달리 사회규제로써의 규제 합리화가 추진되어야함

- 당장의 식품안전규제 강화는 저급한 외국제품의 국내 수입을 저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동일한 잣대가 국내 생산식품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어 특히 영세업체들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식품안전규제를 생산해야 함

-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현존규제 50% 폐지의 규제총량제 실시 후 약해진 식품안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이어져오고 있는데 이제는 식품안전관리 강화, 국제기준 조화, 식품안전관리 영역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강화, 신설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특히 현 정부의 규제정책은 국민행복이라는 국정기조에 맞게 불량식품 근절 등을 위해 규제 완화만이 아니고 식품규제 강화, 신설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식품안전분야의 올바른 규제정책 추진이 건전한 기업의 육성과 식품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 하지만 식품안전규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강도가 상대적으로 타 규제보다 강력함을 고려한 품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향후 기존의 식품안전규제의 지속적 관리 및 새로운 규제의 신설은 기존법과의 충돌, 중복,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특히 규제 사전영향평가 실시, 규제 최소화 등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장중심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순히 규제수를 대폭 줄이는 양적 개혁보다는 개선한 규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규제집행 관행을 고쳐나가야 할 것임

- 타 규제와 달리 식품안전규제의 경우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확대, 규제일몰제의 실질적 운용, 규제개선을 위한 기술적 규제영향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음

- 그리고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진 규제의 효율적인 제정과 관리를 위한 부처간 업무 조정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식품안전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여러 법령 등에 사용되는 오래된 용어와 규정의 최신화가 시급히 필요함

집필자 | 정기혜 (식품정책연구센터장)　문의 | 02-380-8219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